

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,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2.2.(월) 한국경제(온라인), “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... 70%는 못 돌려 받았다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*하는 등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

* (현행)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

(개선)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으로 확대

-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,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
- 먼저, ①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고 ②도급 사업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지급 의무를 넓게 부여하도록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을 개정('26.5.12. 시행 예정)했음
- 이를 통해 현행 민사 절차에서 필요한 가압류, 집행권원 확보(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판결) 절차 등을 생략해 향후 회수 소요기간이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간과 인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*

*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 관련 현장 실무 개편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회수체계개편추진팀 설치('25.11월)

○ 또한, 「근로기준법」상 체불에 귀책 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등이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것과 연동,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하수급사용자에게만 부과되던 변제 책임이 직상수급인 등에게도 인정되도록 하여, 변제금 회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

□ 한편,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용자 등에 소요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노·사 합의로 15년 만에 상향 조정(보수총액의 0.06% → 0.09%)하여, 재정건전성도 확보되도록 하였음

□ 작년 역대 최고의 변제금 회수액을 달성하는 등 누적 변제금 회수액*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만큼,

* ('21) 1조 8,381억→ ('22) 1조 9,913억→ ('23) 2조 1,394억→ ('24) 2조 2,977억→ ('25) 2조 4,768억

○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해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변제금 회수율도 동시에 제고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최다솜 (044-202-7072)

